

제259회 고령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0. 2. 14.(금) 10:00

고령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전 문 위 원

「고령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1. 제 안 자 : 고령군수

2. 제안이유

- 지방의회의 의원발의 입법 활성화와 입법정책개발을 통한 의원 전문성 제고와 실질적인 지방의회의원의 자치입법·정책개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고령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를 구성하고 이에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이 조례에서 정의하는 용어 설명(안 제2조)
- 나. 의원정책개발단체의 구성 인원(안 제3조)
- 다. 의원정책개발단체 심의위원회 구성, 기능, 회의(안 제4조~제6조)
- 라. 의원정책개발단체의 등록, 등록취소, 활동기간(안 제7조~제9조)
- 마. 공동참여 범위 설정(안 제10조)
- 바. 의원정책개발비의 지급(안 제11조)
- 사. 의원정책개발활동의 계획변경과 결과보고서 제출(안 제12조, 제13조)

4. 관계법령

- 가. 지방자치법」 제22조, 제38조, 제66조
- 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5. 검토의견

가. 제정취지

- 고령군의회 의원이 주민과 함께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의원정책개발 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법정책의 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 제2조(정의)에서는 “고령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를 고령군의회 의원이 정책개발 단체를 구성하고 특정관심분야에 관한 조례와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고령군의회에 등록된 단체로 정의 하였으며
- 안 제3조(정책개발단체의 구성)은 하나의 정책개발단체는 의원 3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심의위원회 구성)은 정책개발단체 등록 및 정책개발활동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정책개발단체의 등록 등)은 의원이 정책개발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가 등록신청서에 정책개발활동 계획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10조(공동참여)는 정책개발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11조(정책개발비의 지급 등)은 등록된 정책개발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책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정책개발비를 회수하거나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13조(정책개발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은 정책개발비를 지원 받은 정책개발단체는 해당 정책개발활동을 종료한 후 1개월 이내 정책개발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음.

다.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2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원 정책개발비가 신설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원발의 입법 활성화와 입법정책개발을 통한 의원 전문성 제고와 실질적인 지방의회의원의 자치입법·정책개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정 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의원정책개발단체를 구성하고 이를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고령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의회 의원이 주민과 함께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의원정책개발 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법 정책의 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이하 "정책개발단체"라 한다)란 고령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정책개발단체를 구성하고 특정 관심분야에 관한 조례와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고령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정책개발단체의 의원정책개발비(이하 "정책개발비"라 한다)란 정책개발 및 의원 입법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개발단체의 정책개발에 지원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정책개발단체의 구성) ① 하나의 정책개발단체는 의원 3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② 해당 정책개발단체에는 정책개발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
(단 대표자는 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의원은 2개 이내의 정책개발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정책개발단체 등록 및 정책개발활동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령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에서 수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개발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정책개발활동 계획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정책개발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에 관한 사항
4. 정책개발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책개발단체 활동에 관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정책개발단체 등록을 심의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정책개발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심의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위원회 회의)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의장 또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정책개발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정책개발단체 대표의원을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④ 기타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및 「고령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다.

제7조(정책개발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정책개발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정책개발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2호 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별

지 제3호 서식의 정책개발활동계획서(연구의 주제, 목적, 기간 및 소요 예산 등을 기재)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활동계획서가 접수되면 제6조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의원 정책개발단체 등록서를 해당 정책개발단체에 통지한다.

③ 위원회는 회부 받은 안건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정책개발단체 대표자는 등록된 내용 중 단체명, 대표자 및 회원명단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변경사항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 심사는 생략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정책개발단체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사항을 지체 없이 등록대장에 등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등록된 정책개발단체는 소속 의원의 임기동안 존속한다.

제8조(등록취소) ① 정책개발단체의 회원 수가 제3조에 따른 회원 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해당 정책개발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사를 거쳐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정책개발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정책개발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승인된 정책개발활동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정책개발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4. 정책개발활동 실적이 2년 이상 전혀 없는 경우
5. 의회나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활동을 한 경우
6. 그 외 공익을 해하는 활동을 한 경우

제9조(정책개발활동 기간) 정책개발단체의 정책개발활동 기간은 정책개발활동비 지원신청 승인일부터 당해년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0조(공동참여) 정책개발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제11조(정책개발활동비의 지급 등) ① 의장은 등록된 정책개발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책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하나의 정책개발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의 기준경비를 초과할 수 없다.

② 등록 정책개발단체가 정책개발비를 지급받고자 하면 별지 제6호 서식의 정책개발비 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를 해당 연도 2월 말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등록한 연구단체는 등록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책개발비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④ 정책개발단체는 정책개발비의 범위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⑤ 정책개발비를 지급받은 정책개발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정책개발수행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으로 정책개발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정책개발비를 회수하거나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할 때
2. 정책개발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
3. 정책개발활동 결과보고서가 당초의 정책개발활동 추진계획에 현저히 미달될 때
4. 의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제12조(정책개발활동 계획의 변경) 의원 정책개발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정책개발활동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개발기간이 단축, 정책개발비용의 감액 등 변경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정책개발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정책개발비를 지원받은 정책개발단체는 해당 정책개발활동을 종료한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8호 서식 정책개발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책개발활동 결과보고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정책개발결과는 「의원정책개발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정책개발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심의 결과보고서

「고령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책개발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심의 결과를 보고합니다.

구 분		내 용			
정책개발 단체등록	단체명				
	적격 여부	적격		부적격	
	부적격 사유				
정책개발 주제	주제명				
	적합 여부	적합		부적합	
	부적합 사유				
활동계획	정책개발방법 활동내용				
	적합 여부	적합		부적합	
	부적합 사유				
정책개발비 지원	지원액				
	세부내용	「세부내용: 붙임」			
비고					

년 월 일

고령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고령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정책개발단체 등록신청서

「고령군의회 의원 정책개발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령군의회 의원 정책개발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1. 정책개발단체명:
2. 정책개발 목적:
3. 구성원(명)

구 분	성명	소속 위원회	서명	비 고
대표자				
회원				

※ 붙임: 회칙 또는 정관 (있으면 한함)

년 월 일

신청인: ○○정책개발단체 대표자 ○○○ (인)

고령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정책개발활동 계획서

「고령군의회 의원 정책개발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
따라 아래와 같이 정책개발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정책개발단체명		
대표자		의원
정책개발 내용	주제	
	목적	
정책개발활동기간		~
정책개발방법·활동내용 및 세부계획		「붙임」
정책 개발비	소요액	
	산출내용	「붙임」
비고		

※ 붙임: 정책개발활동 세부계획서, 정책개발비 산출내용 각 1부

신청인: ○○정책개발단체 대표자 ○○○ (인)

고령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의원 정책개발단체 등록서

등록번호	제 호
등록단체명	
대표자	의원
정책개발 주제	
정책개발 활동기간	~
정책개발비	지원액
	지원조건
비고	

귀 단체를 「고령군의회 의원 정책개발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고령군의회 의원 정책개발단체로 등록함.

년 월 일

고령군의회 의장 (인)

[별지 제5호 서식]

정책개발단체 변경신고서

「고령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령군의회 의원 정책개발단체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정책개발 단체명	당초	
	변경	
대표자	당초	
	변경	
변경의원	당초	의원
	변경	의원
변경일자	년 월 일	
변경사유		
비고		

년 월 일

신청인: ○○정책개발단체 대표자 ○○○ (인)

고령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정책개발비 지원신청서

「고령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책개발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정책개발 단체명			
대표자	의원		
정책개발비 지원신청액		정책개발비 지원결정액(A)	
기 수령액(B)			
이번 신청액(C)			
수령 잔액 (D=A-B-C)			
수령인	성명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		
비고			

※ 붙임: 정책개발활동 세부계획서, 정책개발비 산출내용 각 1부

년 월 일

신청인 : ○○정책개발단체 대표자 ○○○ (인)

고령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정책개발활동 변경계획서

「고령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책개발활동 변경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정책개발 단체명			
대표자		의원	
정책 개발 내용	당초	주제	
		목적	
	변경	주제	
		목적	
변경 사유			
변경 후	정책개발방법 활동내용 세부활동내용		
비고			

※ 첨부: 세부 정책개발 계획서(변경분)

신청인: ○○정책개발단체 대표자 ○○○ (인)

고령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정책개발활동 결과보고서

「고령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년도 ○○정책개발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정책개발 단체명	
대표자	의원
정책개발 주제명	
정책개발 목적	
정책개발 방법	
정책개발 내용요약	
비고	

※ 붙임: 정책개발활동 세부결과보고서

년 월 일

○○정책개발단체 대표자 ○○○ (인)

고령군의회 의장 귀하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자치분권제도과) 044-205-3307

제3장 조례와 규칙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38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위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14.>

⑤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포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신설 2011. 7. 14.>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7. 26]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8조(기준경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연도 기준경비를 해마다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는 기준경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7. 30., 2014. 11. 19., 2017. 7. 26.>

1. 업무추진비

2. 지방보조금
 3. 지방의회 관련 경비 중 국외여비(國外旅費),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 통장·이장·반장의 활동보상금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③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기준경비의 범위에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9. 30.]